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4,808,546	7,044,256
일반회계	210,929,674	6,327,890
특별회계	23,878,872	716,366
공기업특별회계	10,694,737	320,84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694,737	320,842
기타특별회계	13,184,135	395,524
수질개선 특별회계	6,496,023	194,8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0,050	602
주택사업 특별회계	2,350,965	70,529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65,716	19,971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336,278	40,088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99,627	26,98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04,227	24,127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75,230	17,257
기반시설 특별회계	36,019	1,08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49,03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